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정당 받기인 및 당원 가입 허용〉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허용〉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31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II . 검토의견	5
1. 공무원의 정당 받기인 및 당원 가입 허용(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5
가. 개정안 주요내용	5
나. 검토의견	7
2.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허용(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가. 개정안 주요내용	13
나. 검토의견	15

I. 개 요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공무원의 정당 받기인 및 당원 가입 허용(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유치원, 초·중·고 교원 포함)에 대하여 정당의 받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받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 6세 이상의 국민은 <u>공무원 그 밖</u> <u>에 그</u>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 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 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받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받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 <u>그</u> ----- ----- ----- ----- ----- -----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 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 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 -----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생략) ② (생략)	----- ----- ----- ----- ----- ----- -----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삭 제>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제22조)》¹⁾

구분	내 용
제1호	국가·지방공무원 (단, 정무직공무원, 정치활동이 가능한 교원 등은 제외)
제2호	사립학교 교원 (대학강사 이상 정치활동 가능 교원 제외)
제3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제4호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금치산자, 선거범 등)

이는 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입법적 조치로 이해됨.²⁾³⁾

1)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현재 2020. 4. 23. 2018헌마551

그런데,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권고」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일정범위 이상 확대하는 법률 정비를 권고한 바 있고,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2011년 6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국제노동 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초·중등 교원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⁴⁾ 중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관한 부분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법목적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결성 및 가입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⁵⁾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5)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중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부분과 의견을 모두 같이 한다. 덧붙여,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에 관한 집단적 형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이므로, 더욱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수범자에 대한 위축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분명한 이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특히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기만 하여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조항은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6)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외국의 사례⁷⁾와 같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외국의 사례는 참고자료 참조

《주요 국가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

구 분	공무원의 정치활동 내용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근거규정
영 국	-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 중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인 현업 및 비사무 직급은 전국·지역단위 정치활동 가능 -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인 고위공무원단 등은 모든 형태의 전국단위 정치활동 금지	가능	가능	2010년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 법 - 공무원복무규정, 각료규정, 공무원운영 규정
미 국	- 정치문제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시 가능 - 특정정당자금의 유치와 제공유도 금지(자발적 납부 가능) -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직위보유 금지	가능	가능	1883년 펜들턴법 1939년, 1940년 제1차, 2차 하차법규제범위 확대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 개정(완화) 1993년 하차법 개정(완화)
프랑스	- 공무원의 의원 출마 가능 - 당선되어도 공무원 신분 보장	가능	가능	1946년 일반공무원법
독 일	-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공무원 겸직 허용 - 연방수상 및 장관은 겸직 금지 - 하원의원 출마 시 낙선되면 공무원신분 유지, 당선되면 사임하되 연금 보장	가능	가능	1953년 연방공무원법
일 본	-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불가 - 정당, 기타 단체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음 -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	가능	불가	1945년 국가공무원법 1949년 인사원 규칙
스페인	공무원의 경우 중립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규정 외에 정치활동에 관한 규제가 없음	가능	가능	공무원기본법
스웨덴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업무에 있어 정치적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계함	가능	가능	-
스위스	- 직업상, 근로관계상 기관의 비밀유지 규정 -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무원이라는 지위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가능	가능	2000년 연방인사법
캐나다	-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개인의 정치 활동은 자유로움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가능	가능	공무원법
호 주	- 공무원은 비정치적이어야 함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함 - 선거운동 중에 공무원 유니폼을 입거나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게 해서는 안됨	가능	가능	1999년 공무원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책]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2022년 12월, 124p.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이러한 입법목적이 공무원들이 제한 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⁹⁾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조제2항의 의의에 대해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헌법 제7조 제1항)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9) 헌재 2021. 11. 25. 2019헌마534, 헌재 2022. 10. 27. 2019헌마1271 등 참조

둘째,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한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와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공무 집행에서의 혼란 초래를 예방하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수호하려는 취지인 반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부와 공무원인 근로자 간의 노사관계적 관점에서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적정한 행사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¹⁰⁾ 양자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대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정서 등을 함께 살펴 공무원의 정치 참여 범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정치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 집권세력의 정치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헌법적 책무,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문화, 국민 공감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에 공무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함.

2.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허용(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관련 후원회에,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관련 후원회의 후원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후원금 기부를 제한한다. ②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 ③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해당한다)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u>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u>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u>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한 자 3. ~ 6. (생략) ③ (생략)	<u>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u>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 -----<u>개인</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와 제11조(후원인의</u>----- ----- ----- ----- ----- ----- ----- -----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¹¹⁾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유치원, 초·중·고 교원 포함)에 대하여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2025. 12. 17., 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당 공무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안,2215333) 주요 내용》

내 용	현행	개정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제22조제1항 제1호)	국가·지방공무원(단, 정무직공무원 등은 제외) 등 단,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제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단, 정무직공무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교원 제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삭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삭제
	「공직선거법」 ¹²⁾ 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좌동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제22조제2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좌동

12)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한편, 개정안은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은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당대표 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에 대하여 후원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에 대한 후원회 가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후원회의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및 후원회 가입 허용 여부 등은 공무원 등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